

가스안전관리 워크숍



주최: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 일시: 2001. 12. 11

. 2002년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가스사용자의 가스 안전 생활화로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귀중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반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 추진방향

종합적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가스안전관리 교육·홍보 강화

2) 대상시설

고압가스 / 제조 저장(59개소)
판매(120개소)
LPG / 공급시설(367개소)
사용시설(601천개소)
도시가스 / 배관(10,106km)
정압기(816개소)
사용시설(3,078천개소)

3)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가스시설 개선 및 현대화

◎ 도시가스 시설
- 정압기실 이전추진
· 대상 : 41개소

(학교부지내 37, 고가도로 하부 4)

- 방법 : 연도별 이전추진
2002(11개소), 2003(9개소),
2004년 이후(21개소)

-심도미달배관 개선

- 배관 정밀탐사 실시 : 6,544km
2001~ 2008년
(2002년 : 650km, 기탐사 1,866km)
※ 배관 탐사결과 도면 및
전산배관망 정비 철저
- 심도미달배관개선 : 75.6km

2. 도시가스배관 보호제도의 강화

◎ 자치구

- 시공관리
 - 명예감독관제, 공사실명제,
주민감시제 시행
- 도로굴착공사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유도
 -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력, 하천,
교량, 건축공사 등
- 도로굴착공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연1회)
 - 건설기계사업단체 및 관련업체와 협의시행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사고확산 방지

◎ 소방서

- 대형공사장 순찰시행
 - 지하철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등 순찰시행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긴급상황시 출동조치

◎ 도시가스회사

- 굴착공사 정보관리를 위한 굴착공사
정보협조체계 구축
 - 관할관청, 굴착공사자,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모니터요원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회신
 - 가스안전영향평가서, 가스배관
안전협의서 작성요청
- 합동감시체계 유지
 - 전담점검원 지정으로 합동 순회점검·
입회시행
- 굴착공사장 순회점검·입회시행
-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준수확인
 - 가스배관 손상방지를 위한 작업기준
준수확인
- 안전교육시행
 - 도시가스회사 임직원, 타 공사장 종사자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긴급상황시
출동조치

◎ 가스안전공사

- 안전교육 시청
 - 굴착공사 조종사(연1회)
- 합동감시체계 구축
 - 전담점검원 지정으로 필요시
합동순회점검 및 입회시행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긴급상황시 출동조치

3. 가스시설 안전점검 강화

◎ 가스공급시설

- 특별점검 : 3회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 수시점검 : 설날, 추석 등 취약시기

◎ 가스사용시설

- 가정 · 영업장 : LPG(공급자 수시 안전점검), 도시가스누설검사 및 정기안전점검(연2회)
- 특정가스사용시설 : 정기검사(연1회)

◎ 다중이용시설 특별관리 및 점검

-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특별관리 및 점검강화
- 설, 추석절 전후 : 2회

◎ 노후시민아파트 LPG시설 안전점검

- 취약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위해 요인 제거
- 기간 : 2002. 2 ~ 3월

◎ LPG어린이시설 안전점검

- 어린이시설 안전점검으로 취약요인 제거
- 기간 : 2002. 4월

◎ 미사용 LPG시설 철거 및 마감조치

- 도시가스 전환시설 등으로 미사용 LPG시설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

◎ 가스운반차량 안전점검

- 적기 안전점검 유도로 대형사고 예방
- 기간 : 2002. 5월, 11월(연2회)

◎ 상습 부적합시설 개선유도

- 대상 : 가스공급시설, 영업장, 공동주택 등
- 기간 : 2001. 1 ~ 12월

◎ 가스보일러 안전관리

- 책임관리체계 운영 (시공자, 가스공급자, 가스사용자)
- 가스보일러 설치현황 전산화(가스공급자)
-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4. 가스관리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홍보

- 안전관리 Work Shop 개최(연 1회)
- 전문직무교육 개최 (필요시)

5. 가스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의 적극 강화

- 대중매체 : 생활정보지, 소식지, 구 Home-Page
- 홍보활동 : 가두캠페인(연2회), 홍보물 배포(연1회), 포렌카드 게시 (연3회)

LPG 안전공급 계약제 전국 확대 실시

소비자와 판매업자간 체적거래 등의 상시거래가 아닌 가격경쟁만으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LPG판매업자도 영세난립 하여 안전법규가 준수되지 않고 있어 LPG 안전 공급제를 실시함

1) 가스공급설비의 소유·관리주체 명확화

- 용기를 포함한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주체를 판매사업자로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판매업자가 지도록 함

2) 안전공급계약 의무화

판매사업자는 공급설비의 안전관리, 소비자 호출시 출동,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공급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후 가스를 공급해야 함.

3)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제도 도입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 의무가입
-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 보상 (인명피해: 8천만원 무과실보장책임보험, 재산피해: 3억 까지 상계보장책임)

4) 판매자 안전관리종합평가제 실시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판매사업자에게 보험료 할인, 장기저리융자 등의 혜택 부여

5) 추진현황

- o 추진일정
- 2001. 11. 1 전국 확대실시
- 계도기간
- 주택: 2001. 11. 1 ~ 2002. 4. 30
- 주택외: 2001. 11. 1 ~ 2002. 1. 31

LPG판매업소 안전관리 대책

영세한 일부 판매업소에서 용기보관실 협소로 LPG용기 노상적치와 상하차시 도로파손 등으로 안전사고와 위험성이 제기되어 LPG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 LPG판매업소 현황

- o 총 315개소(영업 301개소, 휴업 14개소)

2) 문제점

- o 일부 판매업소가 영세하여 용기보관실 협소 등으로 용기를 노상 및 차량에 일시 무단 적재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
- o 용기 상하차시 고무판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여 도로를 파손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 o 가스배달 인력부족 등으로 가스공급시 시행하는 사용자시설 점검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3) 안전관리 강화계획

- o 정기안전점검(년3회) 및 행정처분 강화

- 정기순찰 시행 (소방파출소 주1회 이상)
 - 특히 상가 밀집지역의 판매업소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
- LPG판매업소를 합병하여 대형화 유도
- LPG안전공급계약제도 시행
 - LPG판매업소에 사용자시설 안전관리 책임 부여
- 안전관리 종합평가로 보험료 차등부과
- 안전교육 강화
 - 종사자 간담회 · 교육 년2회로 강화

LPG충전소 안전관리

1) 충전소 종사자 안전의식 강화

- 신규 충전원 · 직원 채용시 가스안전공사 특별교육 이수
- 안전수칙 숙지 및 이행 철저
- 아르바이트생 등 임시직 채용 지양

2) 배상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 · 훈련 강화

- 년 1회 이상 관할소방서 합동 가스차단훈련 실시
- 세이프티카플링 및 긴급차단밸브 월1회 이상 자동 확인
- 자치구별 대표자 간담회 실시

3) 충전소 주변 환경개선

- 충전된 탱크로리 차량 2대 이상 주 · 정차 금지

- 충전소내 불필요한 차량(택시) 주차행위 근절
- “화기엄금”, “절대금연” 등 게시물 부착

4) 미개선 안전설비 조기 개선 유도

- 로딩암 설치: 2001. 3.31까지(기존시설)
- 지하 저장탱크 과충전경보 · 방지장치: 2001. 3.31(기존시설)

5) 안전관리종합평가제 시행

- 단순 시설 검사체계를 시설기준 · 운영실태 · 위해요소 · 사고시 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 할인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행정사항

- 2002년은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시청할 계획임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LPG시설 개선사업 시행
 - 금년사업 마무리 철저
 - 특별교부금 배정예산은 최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미집행 예산은 차후 회수될 수 있음)
 - 금년 예산잔액은 자체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대비할 것
 - 내년 사업은 금월부터 대상자를 조사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가스안전 관리실태 점검결과 시정 · 확인 철저
 - 서울시 조사 제16070-1455호(2001. 12. 3)로 통보한 지적사항